

## 4 (第109回-第1次)

위원선임 및 개선(안)		
□ 위원선임		
소 속	의 원 명	선 임 사 항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정 현 균 구 철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전 국	
□ 위원개선		
소 속	의 원 명	선 임 사 항
한나라당	이 성 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이 철 호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1998. 10. 13 운영위원장		
I. 주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II. 관계규정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의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III.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98.11.21(토)~11.30(월) 10일간		
IV.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운영 13130 -91('98.10.7)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 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 기본계획 채택		
가.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행정사 무감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 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의안 번호	108	발의년월일: 1998년 10월 12일 발의자: 이용부 의원 외 11인
1. 주 문		
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 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3.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37조</li> <li>· 서울특별시의회회규 제70조</li> </ul>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의회회규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 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 : 1998년 10월 14일 ~ 10월 15 일(2일간) 오전 10시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출석이유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부시장(3), 실·국·본부장, 지 방공사 및 공단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 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 및 담 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1	1998. 10.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 상정일자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 원회(1998년 10월 12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p>(제안설명 : 시정개혁단장 장인송)</p> <p>가.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시정개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가) 위원회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함.(안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정의 개혁 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개혁 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li> <li>(3) 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li> <li>(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li> </ul> <p>(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수 : 위원장 2인 포함 21명 이내</li> <li>(2) 의장 : 행정(1)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공동 수행</li> <li>(3)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li> </ul> <p>(다) 실무위원회(안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수 : 위원장 2인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li> <li>(2) 위원장 : 본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li> <li>(3) 위원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li> <li>(4)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li> <li>(ii) 위원회에 상저일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li> <li>(iii)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li> </ul> </li> </ul> <p>(라) 의견청취 등(안 제6조)</p>	<p>○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 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p> <p>(바) 간사(안 제8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둠.</p> <p>(비) 수당 등(안 제9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p> <p>다.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견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회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나) 예산조치 :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 '9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김동수)</p> <p>○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이며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구현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자문기능의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p> <p>○ 제106회 임시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의견 보류되고, 제108회 임시회의시 기획경제위원회안, 의원발의 수정안, 원안 등 3개안 모두가 부결됨에 따라</p> <p>○ 서울특별시장이 당초 제출한('98.7.11) 조례안 제3조(구성 등) 제1항의 위원수를 20인에서 2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위원위촉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금번 제출한 것으로</p> <p>○ 동 사항은 제106회, 제108회 임시회의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p>
---	---

6 (第109回-第1次)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답변 :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8명 전원 일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정의 개혁 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등 개혁방안 구체화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 검토

제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